

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6. 12. 13.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

수신자 정치하는엄마들 귀하 (우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 
NGO돋움터 정치하는엄마들)

(경유)

제 목 정보 (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) 결정 통지서

(앞 쪽)

접수번호 7567922	접수일 2021. 03. 03.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<p>안녕하세요.</p> <p>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.</p> <p>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</p> <p>학내 성추행·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(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. 12. 11)에 따라</p> <p>교육청이 정보 공개한 학교들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0년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를 청구합니다.</p> <p>첨부한 서식을 채워주시기 바라며, 사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경찰 신고내용 또는 장 학사 조사했거나 교육청 감사한 내용에서 가해자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 별첨해 주십시오.</p> <p>○청구 기간: 2018~2020년</p> <p>○청구 내용: 첨부 파일 참조</p> <p>1. 판결문(2020누38166)</p> <p>2. 서식_학교성폭력 처리현황</p> <p>고맙습니다.</p>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공개 내용	첨부파일 참조		
공개 일시	2021. 03. 30. 20	공개 장소	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
공개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·시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본·출력물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자파일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제·인화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수령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방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전송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보통신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납부 금액	① 수수료	② 우송료	③ 수수료 감면액
	0원	0원	0원
계(①+②-③) 0원			
납부일	수수료 산정 명세	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
			[ ]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		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내용은 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② 부존재하므로 비공개합니다.	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## 서울특별시교육감

기타(6급상당) **정명화**

민주시민생활 **백해룡**  
교육과장

협조자

시행 민주시민생활교육과-7328(2021. 03. 30.)

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

전화번호 02-399-9548

팩스번호 02--

/ myeonghwajeong@sen.go.kr

/ 공개 구분

### 유의 사항

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 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- 다. 청구인의 임의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 -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 -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3.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4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**
6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7.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